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톱킹행위 피해 정보 삭제지원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30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톡킹 행위 피해 정보 삭제지원	2
※ 참고자료	11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20.
3. 회 부 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1.)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스톱킹행위에 추가되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톱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톱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톱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 삭제지원

개정안은 국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¹⁾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에 배포되거나 게시된 정보 등(이하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지원에 관하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부터 제6항²⁾까지를 준용하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개정안 발의 당시(2025.1.20.)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부터 제6항은 아래와 같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1호, 2024.10.16. 개정되고 2025.4.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 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는 내용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에 배포되거나 게시된 정보 등(이하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라 한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 지원에 관하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촬영물등”은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본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의 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³⁾함.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에 따라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정보⁵⁾라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⁶⁾이 규정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스톱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진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⁷⁾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34호, 2024.12.3. 일부개정, 2025.6.4. 시행)」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할 때 실무적으로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도 함께 삭제지원되고 있다고 함.

개정안은 온라인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되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스토킹행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를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스토킹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등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임.

현재는 온라인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법에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방지법」의 삭제지원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 모두 디지털성범죄에 적용되는 삭제지원에 준하여 국가로부터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로 현재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8)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당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⁹⁾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 가해와 피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를 시급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삭제요청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침해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요건이 까다로운 점,

이미 디지털성범죄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범죄가 행해지는 경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사입법례¹⁰⁾¹¹⁾가 있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9) 2025년 4월부터 「성폭력방지법」상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역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을 추진하여 2025년 8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스톡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스톡킹 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지원에 관하여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2024년 10월 개정되어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성폭력행위자 등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가 신설되는 등 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안도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구상권 행사를 위한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의 요청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준용보다는 직접 구상권 행사 및 자료 요청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구상권 행사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다만, 교육부 차원에서 촬영물등 삭제지원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촬영물등 삭제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피해자를 연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는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 삭제지원 업무는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은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삭제지원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¹²⁾.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국가가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스토킹방지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2025년 4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삭제지원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7조의2제1항의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맞추어 준용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스토킹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유형(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이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이 최근(2024년 1월부터)에야 시행되었고, 현재는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이 개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 관련 피해 건수나 정보 삭제건수 등 관련 통계가 현재 없는 상황임.

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통을 제한할 수 있고, 개정안의 스톡킹 피해 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9호에도 해당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 전 법률	현행(법률 제20461호, 2024.10.16.개정, 2025.4.17.시행)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② -----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개정 전 법률	현행(법률 제20461호, 2024.10.16.개정, 2025.4.17.시행)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촬영물등</u>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u>촬영물등과</u>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u>촬영물등</u>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 ④ 제1항에 따른 <u>촬영물등</u>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 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u>촬영물등</u>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 1. -----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 ----- ----- ----- -----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